

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내실화를 위한

## 업무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(이하 “협약기관” 이라 한다)는 교육부 학교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‘교직원 안전연수’ 내실화를 위하여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,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및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호혜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교직원 안전연수 운영 및 교육부,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연계 연수 지원
2.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 개발, 강사교육 등 공동 지원·협력
3. 연수 계획수립, 운영, 이수처리, 결과보고 등 연수 추진
4. 서울교육대학교 소유 교육장 사용 협약

**제3조(협력내용)** ①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(서울교육대학교) 안전연수 교재 개발, 강사교육 및 권역 연수 계획 수립, 운영, 체험관 연계 지원, 교육장 사용 협약 등 협력
2. (학교안전공제중앙회) 안전연수 내실화 및 연수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, 연수생 모집, 연수비 지원 등 행정·재정 지원, 연수 운영관리
3. (공통) 연수홍보(보도자료 배포, 기관 홍보채널 등 활용), 협의회 개최, 기타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제1호의 내용 중 교육장 사용 협약 세부사항은 별첨내용을 따른다.

제4조(협약 조정)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권리·의무 승계) 본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7조(효력발생 및 기간)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별도의 협약 종료요청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협약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0월 12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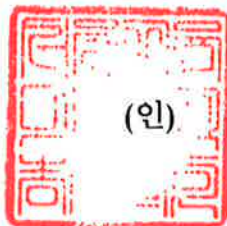


**서울교육대학교**  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

**학교안전공제중앙회**  
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

총 장 임 채 성 (인) 이사장 공 은 배



# 교육장 사용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 라 한다)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(이하 “공제중앙회” 라 한다)는 서울교대 소유 교육장 사용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의 목적은 “공제중앙회”가 서울교대 교육장을 안전교육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실시를 위한 장소로 사용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“서울교대”와 “공제중앙회”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실시를 통한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
**제3조(사용의 범위)** ① “서울교대”와 “공제중앙회”가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교육장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교육장 대관에 관한 사항은 “서울교육대학교 시설물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”에 따른다.

1. 시설현황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 
- 시설면적 : 0㎡ (40M×19M, 2면)

2. 부대시설

3.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교육장의 사용은 “공제중앙회”가 주최하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에 한한다.

**제4조(사용기간)** “공제중앙회”의 교육장 사용기간은 별도 협약 종료요청이 없는 한 지속 유효

**제5조(사용료 등)** ①교육장 사용료는 서울교육대학교 시설물 이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월단위로 선납한다.

②제16조 제1항 2호~4호에 의거 “서울교대”가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부대경비 등)** ① “공제중앙회”는 청결유지 관리비 발생 시 “서울교대”가 산정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“공제중앙회”의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“서울교대”의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**제7조(시설관리)** “공제중앙회”은 교육장을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“서울교대”의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, “서울교대”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시설운영)** 교육장의 각종 시설은 “서울교대”가 운영한다.

**제9조(교육장의 질서유지 등)** “공제중앙회”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 시 안전 및 안내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주차장 사용)** “공제중앙회”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“서울교대”가 운영하는 주차장 구역만을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1조(사업계획서 등)** ① “공제중앙회”는 분기별로 교육장 사용에 관한 제반서류를 “서울교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공제중앙회”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일정, 인원 수, 교육과정 편성 등을 “서울교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지도·감독)** “서울교대”는 “공제중앙회”에 교육장 사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이때 “공제중앙회”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민원해소)** “공제중앙회”는 교육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,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.

**제14조(손해배상 및 민·형사상 책임)** ① 교육장 및 관련시설의 사용·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시공 상 하자 등 “서울교대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각종 사건·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“공제중앙회”가 부담한다.

② “공제중앙회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서울교대”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“공제중앙회”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“서울교대”에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협약의 해지)** ① “서울교대”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
  2. “공제중앙회”가 본 협약의 내용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, 지연하여 “서울교대”의 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
  3. “공제중앙회”가 협약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
  4. “공제중앙회”가 교육장 사용을 중도포기 또는 타 교육장으로 이전한 때
- ② “서울교대”는 제1항 2호 내지 4호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“공제중앙회”에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“서울교대”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0일 전에 해지의사를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“공제중앙회”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.

**제16조(정보·자료제공 의무)**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 운영과 관련한 “서울교대”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“공제중앙회”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권리·의무 승계)** 본 협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“서울교대” 또는 “공제중앙회”의 합병, 영업양도,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“서울교대” 또는 “공제중앙회”의 합병회사, 영업양수인,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, “서울교대” 또는 “공제중앙회”는 그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.

**제18조(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)** “서울교대” 또는 “공제중앙회”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.

**제19조(비밀준수 의무)** “서울교대”와 “공제중앙회”는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또는 영업비밀 등의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협약 이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0조(분쟁해결)** “서울교대”와 “공제중앙회”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,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소송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21조(협약의 해석)** ①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.

②이 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서울교대”와 “공제중앙회”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22조(협약의 변경) 본 협약내용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“서울교대”와 “공제중앙회”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23조(협약의 효력) ①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 부터 발생하고,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·사고 처리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②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“서울교대”와 “공제중앙회”가 서명(기명)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. 10. 12.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96

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

(도화동, 고려빌딩) 6층

서울교육대학교 총장

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

임채성 (인)

공은배 (인)

